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3-238호

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‘호열자병예방주의서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5일

문화재청장

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(호열자병예방주의서)

1. 공 고 명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내용

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 (소재지)
호열자병예방주의서	1건	14.8 × 21.4	1902년	한독의약박물관 (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7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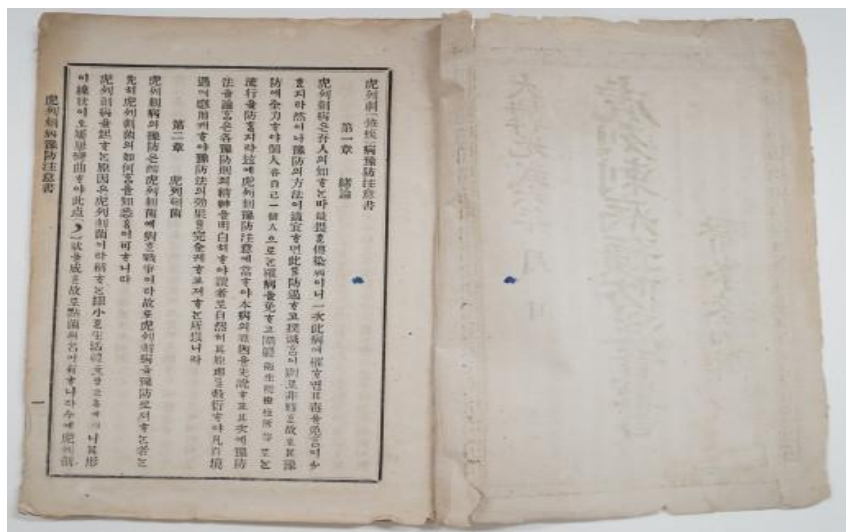
2) 등록 예고 사유

○ 『호열자병예방주의서』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, 콜레라의 전염과 그 병의 유행 및 예방법, 환자 관리,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이다.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 발전에 기여한 故 김두중 박사가 기증한 자료로서,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활동을 볼 수 있어 의학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.

○ 상세 내역



< 앞 표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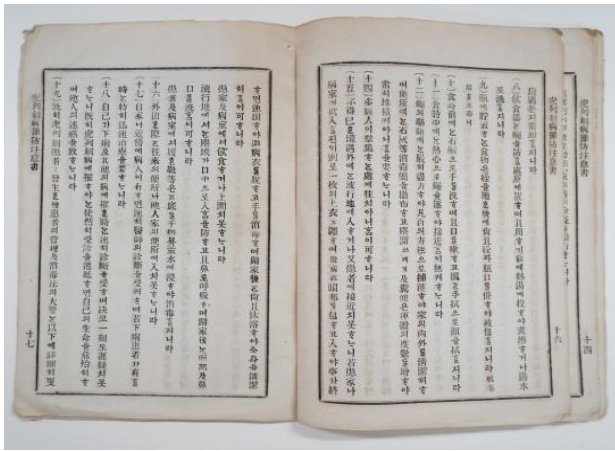
< 내지 1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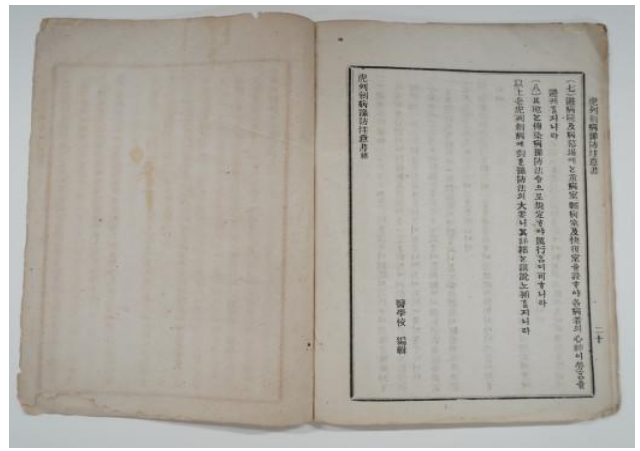
< 뒷 표지 >



< 내지 10, 11 >



< 내지 16, 17 >



< 내지 20 >

3. 등록 예고일 : 2023. 6. 15.
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자율서식)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 지정예고」에 등재

다. 연락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, 4889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